

‘기업사례연구’ 코너에서는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있다. 분석 기업의 선별은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 런던증권거래소(LSE)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산업분류인 ICB(Industry Classification Benchmark)의 10개 산업에서 해당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10개 산업은 정보기술, 석유·가스, 소재, 산업재, 소비재, 소비자서비스, 보건의료, 금융, 통신서비스, 유틸리티이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석유·가스 기업인 셰브론(Chevron)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장수미 연구원

- I. 머리글
- II. 셰브론 개관
- III. 이사회 의 운영
- IV.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 V.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정들
- VI. Proxy Statement
- VII. 맺음말

I. 머리글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고도의 산업화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눈부신 산업화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원동력의 하나로 천연자원, 특히 석유·가스를 떠올리는데 많은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집약된 석유·가스 회사의 등장은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균형을 보장해주었으며 이러한 역할은 산업 분야에서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가스는 자원 생산이 한정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시장 균형의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정유회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기업사례연구에서는 엑손모빌(ExxonMobil, 미국)과 함께 세계 1,2위의 종합 정유회사로 세계 석유시장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셰브론 텍사코사의 지배구조 관련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셰브론사의 경영투명성 및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셰브론사는 우리나라의 GS-칼텍스 지분을 50% 소유하고 경영권을 획득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셰브론의 지배구조 연구는 우리나라 정유회사를 비롯하여 다른 기업들의 지배구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셰브론사의 역사와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 되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운영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셰브론사의 정관 및 윤리강령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알아보면 이를 통해 지배구조에 대한 셰브론사의 견해를 알아볼 것이다.

II. 셰브론 개관

역사와 현황

1879년 9월 10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퍼시픽 코스트 석유(Pacific Coast Oil Co)’로 출발한 셰브론사는 1936년 캘리포니아 아라비안 텍사코와 합자하여 칼텍스 석유(Caltex Petroleum Corp)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미국 본토에서의 공급원의 확충과 세계 90여 개국 판매망을 통하여 총자산 1326억 달러, 매출액 2006억 달러, 1714억 달러의 당기 순이익(2006년 기준)을 내는 세계 굴지의 다국적 종합정유회사로 성장하였다. 특히 Chevron Texaco사는 2001년 11월 2일 Chevron사가 Texaco사를 흡수 합병하여 탄생되었으며 GS-Caltex의 지분을 50% 소유하고 경영권을 획득하여 우리나라에도 친숙한 회사가 되었다. 또한 경영권 획득 이후에도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모범적인 합병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합병과 함께 Angola에서의 새로운 오일 생산은 셰브론사의 사업 규모를 증가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5년 대비 매출 6%, 이윤 22% 상승은 셰브론사를 세계 2위 규모의 석유 회사로 뿐만 아니라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매출액 2006억 달러의 세계 4위 규모의 기업(Fortune500)으로 자리매김 해 주었다. 셰브론사는 세계 굴지의 정유 종합회사로서의 경영실적 못지않게 사회와 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경영 방식으로도 유명하다. 예를 들면 환경 친화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People Do’ 캠페인과 내부 벤치마킹의 활성화를 통해 지식 이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기업들의 윤리,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볼 때 셰브론사의 선진 경영방식과 기업의 사회 책임의식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이사회 의 운영

1. 이사회 및 집행임원의 인적구성

이사회와 집행임원은 웨브론을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두 축이다. 현재 이사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명은 집행임원을 겸하고 있다. 집행임원을 겸하고 있는 이사는 이사회의장과 CEO직을 맡고 있는 David J. O'Reilly와 이사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Peter J. Robertson이다. 이사회는 14명의 이사 중 2명을 제외하고는 1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다. 이사회의 높은 독립성은 사외이사 비율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경영진인 집행임원은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는 2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다. 이사회에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실제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 임원들은 각 부분의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Chevron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구분	이사
사내이사	David J. O'Reilly (이사회회장 & CEO) Peter J. Robertson (이사회부회장)
사외이사	Samuel H. Armacoast (SRI International 의장, 선임사외이사) Linnet F. Deily (전 U.S Trade 대표자 & WTO 미국 대표) Robert E. Denham (Munger, Tolles & Olson, LLP 파트너) Robert J. Eaton (Daimler Chrysler AG 경영 이사회 은퇴 의장) Sam Ginn (개인 투자자; Vodafone Air Touch, PLC 은퇴 의장) Franklyn G. Jenifer (Dallas Texas University 명예 총장) Sam Nunn (Nuclear Threat Initiative CEO & 공동의장; 전 Georgia주 상원의원) Donald B. Rice (Agensys, Inc. 의장 & CEO) Kevin W. Sharer (Amgen, Inc. 의장 & CEO) Charles R. Shoemate (Bestfoods 은퇴 의장 & CEO) Ronald D. Sugar (Nirthrop Grumman Corp 의장 & CEO) Carl Ware (Coca-Cola Co. CEO의 전 수석고문)

<Chevron 집행임원 (Executive Officers)>

구분	이사
이사 겸직 집행임원	David J. O'Reilly (이사회회장 & CEO) Peter J. Robertson (이사회부회장)
집행 임원	John E. Bethancourt (Technology and Services 부사장) Stephen Crowe (부사장 & CFO) Charles James (부사장 & 일반 고문) George Kirkland (Upstream and Gas 부사장) Michael K. Wirth (Global Downstream 부사장)

2. 이사회 내 위원회

웨브론 이사회는 총 4개의 하부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이사회 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들은 1. 감사위원회 2. 보상위원회 3. 지배구조 및 추천위원회 4. 공정정책위원회가 있다. 위원회의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면,

1) 감사위원회

- 회사 재무 조항의 자산과 비용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회계사에 의해 효과적으로 감사되어야 한다.
- 위원회 위원의 책임 있고 통찰력 있는 업무 보장을 위해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서 요구하는 효과적인 내부감사기능을 보장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회사의 정책들과 가이드라인, 경영 과정에서 노출되는 재무 위험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회사 업무의 적절한 정보와 보안 조항에 대해서도 통찰력이 필요하다.
-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조항에서 요구 되는 회사의 연간 주주총회에서 필요한 Proxy Statement가 포함된 보고서를 준 비하여야 한다.

2) 보상위원회

- 보상위원회는 회사 임원들의 보상에 관련된 일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보통주에 기반을 둔 적당한 보상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Chevron 위원회의 구성>

이사	감사	지배구조 및 추천	보상	공공정책
사외이사				
Samuel H. Armacoast		의장	구성원	
Linnet F. Deily	구성원			
Robert E. Denham	구성원		의장	
Robert J. Eaton				구성원
Sam Ginn		구성원		구성원
Franklyn G. Jenifer	구성원			
Sam Nunn		구성원		의장
Donald B. Rice		구성원		구성원
Kevin W. Sharer		구성원	구성원	
Charles R. Shoemate	의장			
Ronald D. Sugar			구성원	구성원
Carl Ware		구성원	구성원	
사내이사				
David J. O'Reilly				
Peter J. Robertson				

3) 지배구조 및 추천위원회

- 이사회 구성원들의 올바른 자질에 대해 정의하고 개개인에 대한 적절한하고 효과적인 의무와 책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회사 지배구조에 관련된 적절한 집중과 주주들의 관심에 대한 효과적인 반응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4) 공공정책위원회

- 사회, 정치, 환경적인 흐름과 이슈와 문제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도와야 한다.
- 공공정책이 얼마나 회사의 경영 활동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 공공정책의 흐름을 얼마나 회사가 예상할 수 있으며 더 효과적인 경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혹은 중요한 정책에 조금 더 기여하기 위해 적응할 수 있는지 결정 해야 한다.
- 회사의 평판을 분석하고 회사의 사업 전략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기여하기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전략과 프로그램과 공공정책적인 이슈들을 채택하고 시행하는데 이사회에 적절한 제안을 할 수 있다.

IV.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쉐브론은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바람직한 이사회의 역할과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한 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위원회 현장과 정관,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여러 가지 지배구조 관련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 전반을 평가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 제시한 가이드라인 목차 가운데 지배구조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과 일에 대하여 감독하고 정책을 제공한다. 전반적인 회사 성과와 회사의 재무 성실성의 통제와 합법적인 효율성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된다. 이사회는 경영과 성공을 위한 핵심 계획을 감독한다. 또한 이사회는 회

사의 전략과 사업 계획 과정에 대한 감독을 한다.

2. 이사회 구성원의 기준

이사회 구성원에게는 높은 전문성과 회사의 방침과 일맥상통하는 개인적 윤리 가치가 요구된다. 사업이나 정치, 교육, 기술과 공공의 관심이 있어서 넓은 경험을 가져야만 한다. 그들은 그들의 경험과 전문 영역에 대하여 통찰력과 실질적인 지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주주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헌신하여야 하며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기업의 이사회 활동 수를 제한한다.

지배구조 및 추천위원회는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활동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매년 이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기술과 특성을 재고해봐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다양성과 나이, 기술과 지식, 경험과 능력의 균형을 위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

3. 이사의 독립성

뉴욕증권거래소(NYSE, New York Stock Exchange)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위원회는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된다. '독립성'을 위해 지배구조 및 추천위원회는 이사직 이외에는 회사와 아무런 관계없는 후보를 추천하게 되며, 추천 받은 후보 가운데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독립성을 확신하기 위해 위원회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기준에 부합하는 특정 독립성 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이사의 선택

이사들은 매년 총회를 통해 주주에 의해 선출된다. 이사회에서는 매년 후보 예정표를 제안하게 된다. 총회 중에, 이사회는 다음해 총회까지 활동할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지배구조 및 추천위원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균형 있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사를 탐색, 추천하게 된다.

5. 위원회 규모

위원회의 규모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관에서 제시한다. 적합한 위원회의 규모는 매년 지배구조 및 추천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 만약 어떠한 후보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부적합한 경우, 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6. 이사 임기

이사들은 후계자가 결정될 때 까지 일년 단위로 진행된다. 그들은 회사의 연간 보고서에 기록된 성과에 기초한 선거를 하게 된다.

7. 위원회 위원 선출

위원회 위원 후보들은 일반적으로 비경쟁 투표와 경쟁 투표에 의해 선정된다. 지배구조 및 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앞으로 회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능력들에 대한 여러 사실들과 환경을 살펴보게 된다.

8. 이사회 구성원

이사들은 이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른 이사회에 소속 가능한 수를 제한한다. 현재의 지위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지배구조 및 추천위원회에서 회사의 이사회 활동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로 지정하게 된다.

9. 이사회 은퇴 정책

사외이사는 72세 이후로는 재선임 될 수 없다. 은퇴 후 사내이사는 이사로서 활동할 수 없다. 사내이사의 의무적인 은퇴 연령은 65세이다. 사외이사는 정해진 임기 기간 중에 활동에 변경이 생기게 되는 경우 지배구조 및 추천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

10. 위원회 수와 지위

이사회는 감사, 지배구조 및 추천위원회, 보상과 공공정책 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모든 위원회의 이사와 사외이사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정의된 대로 독립적인 구성원들로 구성된다. 게다가 모든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은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이사 보수 이외의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각각의 위원회는 회의의 빈도와 회의의 시간, 정보와 통계에 대하여 의제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이사로 운영된다.

11. 선임사외이사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립적인 이사들 가운데 선임사외이사를 선출하게 된다. 선임사외이사는 회사의 주요 의제에 관한 사항과 회사 운영에 관한 주요 현안들을 회사대표와 이사회에서 상의하게 된다.

12. 경영진 회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운영 스케줄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의를 참석하게 된다.

13. 경영 행동과 윤리 코드

이사회는 모든 이사들이 세브론의 윤리규정에 적합한 높은 윤리기준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사회는 또한 회사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윤리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된다.

14. 성공전략

사외이사들은 성공전략을 위해 자질이 충분한 후보들을 검증해 보게 된다.

15. 보상

사외이사들은 주주이익과 경영성과와 연결되어 보상을 받게 된다. 단 사외이사들은 퇴직금을 보상받지 못한다. 사내이사들은 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따른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

16.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사소통

이사들은 어떤 의문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진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7. 이사 오리엔테이션과 교육

회사는 지속적인 문서작성과 발표 그리고 방문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이사들이 회사의 비용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해주어야 한다. 회사는 진행 중인 이사 교육에 관한 정보를 이사회 회의에서 간단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18. 이사회 성과 평가

이사회와 위원회는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지배구조 및 추천위원회는 이런 자체 평가 프로그램의 과정에 대해 감독하고 위원회와 이사들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된다.

19. CEO 성과 평가

이사회는 매년 CEO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 및 추천위원회는 모든 이사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CEO 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들과 함께 이사회에서 평가한다.

20. 이사와 주식소유 가이드라인

이사회는 모든 이사들과 동기 임원들이 회사 주식의 상당한 양을 소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지배구조 및 추천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동기임원에 적합한 주식 소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소유 현황을 위해 조언할 수 있다. 목표는 연봉에 기초하여 마련되어 있다. CEO는 연봉에 5배, 부사장과 동기임원과 CFO는 연봉에 2배가 마련되어 있다. 보상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적합성을 평가하게 된다.

21. 이사회 안전과 회의

이사회 의장과의 협의를 통해 CEO는 이사회 개최 시간과 기간을 정하게 된다. 정기적인 이사회 뿐 아니라 필요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은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제를 선정할 수 있다. 매년 이사회는 미래에 회사가 직면하게 될 이슈들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재고해 봐야한다.

22. 다수의 승인을 얻은 주주제안에 대한 정책

주주총회 포럼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었으나 이사회 의 지지를 얻지 못한 주주제안정책에 대하여 재고해보아야 한다. 제안

에 대한 행동은 적절한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보고된다.

23. 회계, 내부통제, 감사문제에 대한 보고서

이러한 내부통제, 회계, 감사문제에 관련된 의문사항들은 누구든지 웨브론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24. 주주권리에 관한 정책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권리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사회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약 주주들의 승인이 없는 경우, 계획은 선거 후 30일 내에 폐기되어야 한다.

25. 정기적인 회사 지배구조가이드라인 검토

지배구조 및 추천위원회는 회사의 지배구조가이드라인과 지배구조 관련 서류들을 매년 살펴보고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V.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정들

1. 웨브론 정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CHEVRON CORPORATION)

웨브론社의 정관은 총 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중 몇 개 조항은 내규 조항에 위임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 중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7조와 9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웨브론 정관	1조 - 이름 2조 - 본점 소재지 및 대리인 3조 - 목적 4조 - 자본 5조 - 자기 주식의 취득 6조 - 이사 7조 - 이사회 내 공정위원회 8조 - 특별 주주총회 9조 - 이사책임의 제한
--------	--

(1) 7조 - 이사회 내 공정위원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주주가 존재하는 시기에는 이사회 내에 공정위원회가 존재하게 된다. 이들은 정관이나 내규에 규정된 의무와 권한을 가지게 된다. 공정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의 10% 주주가 아닌 각각의 이사들은 위원회 설립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공정위원회는 구성원에 의해 위원회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물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원회는 최소 위원 3명의 동의가 없다면 어떤 행동의 권한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위원회 활동과 구성원에게 필요한 지출과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해야 한다.

(2) 9조 - 이사책임의 제한

회사의 이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활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 혹은 주주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a) 이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나 주주에 대한 신임을 저버리는 경우
- (b) 위법임을 알면서도 행한 고의적인 행동 과실과 태만
- (c) 회사법 174조항에 준하거나 혹은
- (d) 부적합한 사적인 이익에서 유도된 어떠한 거래

이사가 이사로서 지켜야하는 윤리나 회사법으로 제정된 규정을 어기는 경우 그 책임을 추궁당해야 하지만 이사의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경영을 존중하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적절한 경영 과정에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이사는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경영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웨브론 행동강령 및 윤리규정 (Business Conduct and Ethics Code)

쉐브론은 임직원의 법적인 의무뿐 아니라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2005년 7월1일에 제정된 행동강령 및 윤리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법규상의 준수사항과 더불어 회사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에서 따라야 할 조항들을 요약하여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관과 내규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 관한 명확한 규정 조항들을 제시해주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회사 경영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에 정보를 알아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앞의 문서들과 마찬가지로 행동강령 및 윤리규정 역시 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Chevron way'라고 일컬어지는 쉘브론 특유의 경영 철학에 부합되는 조항들로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내용에 대하여 목차 위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행동원칙	적용 사항
역할과 책임	<p>역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합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p> <p>책임: 정책감독위원회는 지속적인 감독 업무를 통해 각 기관의 책임 있고 정직한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매일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시스템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통역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성 있는 경영활동을 지원해주는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p>
회계와 내부통제	<p>회계: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회계사뿐 아니라 회사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 요구되며 이때 모든 회계 기록은 정확성과 정직성을 기본으로 한다. 자산과 부채, 비용과 수익과 같은 자금 관련 거래에 관한 모든 보고서는 미국 증권선물거래소를 통해 공시함을 원칙으로 한다.</p> <p>내부통제: 공정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내부통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CEO와 CFO는 지난 분기 결의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보장해 주었다. 또한 사내의 감사는 회사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어떠한 잘못된 기록도 용인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회사의 내부통제는 고용인들과 이사들의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p>
이해상충 해결	<p>이해상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인과 이사들은 회사의 이윤, 평판, 업무성과에 반하는 방향의 행동은 제약을 받게 된다. .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 혹은 영향력을 개인적이고 부적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회사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상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 회사 관련 기업으로부터 접대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 회사의 정보와 자산을 통한 이윤을 획득해서는 안된다. <p>내부거래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경영 이외에는 회사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와 같은 금 전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 다양성 보장, 차별금지, 정책 남용 금지, 업무 중 폭력금지 <p>성과급 및 고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업무 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p>
정치적 참여	<p>회사의 윤리 규정은 정부의 법과 규칙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한다. 로비, 공무원 접대,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정의와 함께 세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한 업무는 이사회 내 공공정책위원회가 담당한다.</p>
다국적 활동	<p>각 나라의 법과 규정, 관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뇌물은 엄격히 금지되며 수입과 수출에 관한 요구와 통제에 순응해야 한다. 또한 세관 규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p>
건강, 환경과 안전	<p>The Operational Excellence Management System(OEMS)에서 이에 맞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회사의 규정은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법으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법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맞춰 관련 규정 또한 수정되어야 한다.</p>
독점금지과 경쟁	<p>공정한 자유경쟁시장을 추구하는 미국의 경쟁과 독과점 금지에 관한 법을 따르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p> <p>경쟁자와의 접촉: 경쟁자와 무관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하는 고정 가격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p>
사적 정보	<p>사적 정보의 공개: 정해진 목적 달성을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사적 정보는 규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p>
지적 재산권의 보호	<p>지적 재산의 접근과 사용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거래 기밀, 회사의 장래 이윤과 관련이 있거나 소비자의 계좌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한해 정보의 기밀 유지를 보장받은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p> <p>문서나 지도나 파일의 복사와 같은 모든 저작법이 적용되는 정보에 관해서도 저작자의 동의</p>

하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D, 비밀번호, PIN과 같은 컴퓨터 관련 정보와 이메일과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책임이 필요하다.

VI. Proxy Statement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 이전에 Proxy Statement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Proxy Statement란 주주총회에 앞서 주주들에게 미리 앞으로 주주총회에서 다루어질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웨브론도 2007년에 다루어질 주요 문제들에 대한 Proxy Statement를 제공하고 있다. 주체 중심으로 이번 사업 년도에 웨브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이슈들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2007년 정기 주주총회의 주요 이슈

1. 일반적인 정보

Proxy Holder의 임명과 선거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정보와 이사 선거

이사 후보

3. 이사회 운영

이사회 위원회 구성과 기능들

이사회 활동과 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경영 행동강령과 윤리조항

내부 관련자와의 거래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배구조 및 추천위원회 보고서

보상위원회 보고서

4. 임원 보상

보상에 관한 토의와 요약 테이블

성과급의 승인과 재정연도 말에 지급되는 보통주

옵션의 실행과 확정 주식

연금 수혜

5. 주식 보상 계획 정보

6. 이사들의 보상

7. 주식 소유 정보

특정 주식 소유자와 경영

8. 독립적인 감사에 대한 승인

9. 주주제안

VII. 맺음말

이상으로 웨브론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웨브론사는 2001년 텍사코사와의 합병이후 관련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의 규모와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또한 여전히 세계 산업과 경제는 석유라는 중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동향과 가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다른 적합한 대체 자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용화되기까지 앞으로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석유 산업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단독 사업 규모로 뿐만 아니라 세계 산업과 경제 전반에 걸쳐있는 산업 의존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쉘브론社의 중요성은 매우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행동강령 및 윤리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관련 사업 이외의 환경 및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중요시하는 쉘브론社의 경영 철학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윤리 및 책임 경영을 강조하는 측면에 비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이 약간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주주권리 혹은 이사회에 관련한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다소 어렵다고 지적할 수 있다. 정관에 제시된 보상의 일반적인 규정 이외의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보상 규정의 세부 내용의 부재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소 아쉬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내외부적인 투명 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표 기업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쉘브론社는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